

이민종합정책 지수(MIPEX)에 관한 한일 유럽의 비교¹

近藤 敦 (明城大学)

이민종합정책 지수(MIPEX)는 EU 시민 이외의 정규 체재 외국인² (EU 이외의 일본등은 정규 체재 외국인)의 권리 보장에 관한 비교 조사다³. 2004년에 EU 15개국의 노동시장, 가족결합, 영주허가, 국적취득, 차별금지의 5개 분야에 대한 파이럿 조사가 시작되었다⁴. 2회째인 2007년 조사는 정치참가를 첨가해서 6개 분야에 대해 유럽 25개국과 캐나다, 노르웨이, 스위스를 포함한 28개국을 비교했다⁵. 3회째는 원칙으로 2010년 5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여⁶ 교육을 첨가한 7개 분야에 대해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신규 EU가맹국과 미국, EU27개국(크로아티아를 제외), 캐나다, 노르웨이, 스위스가 정식 멤버로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한국, 터키, 세르비아, 아르메니아가 옵저버로 참가하고 있다⁷. 옵저버는 평가 기준을 재평가하는 회의에는 참가하지 않지만 같은 조사 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일본의 다문화공생법제의 과제를 검토할 때에 공통의 평가기준에 따른 비교연구는 참고가 될 것이다.

표 1은 39개국의 이민종합정책지수의 전체 평가이다.

-
1. 이 원고는 콘도 아즈시(近藤 敦) 「이민종합정책 지수(MIPEX)와 일본의 법적 과제」名城法学 62권 1호 (2012) 77-107 쪽을 가필해 한국을 비교 대상국에 포함시켰고 일본 평가의 수정점수 등에 밑줄을 그었다.
 2. 교육이나 2013년 조사에 새로 첨가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비정규체재자 권리의 비교조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런 조사의 필요성이 인식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3. 싱크탱크의 Migration Policy Group 를 중심으로 각국의 이민정책연구자가 참가하고 있다.
 4. Jan Niessen et al., *European Civic Citizenship and Inclusion Index* (Migration Policy Group, 2005). Available at: fpc.org.uk/fsblob/416.pdf. (2015년 1월 8일).
 5. Jan Niessen et al.,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Migration Policy Group, 2008).
 6. 한국의 조사는 2012년 8월 1일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7.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III*. Available at: <http://www.mipex.eu> (2015년 1월 8일).

표 1. 39 개국의 이민종합정책지수 2010 (전체평가)

순위	국가	%	순위	국가	%	순위	국가	%
1	스웨덴	83	14=	독일	57	27	스위스	44
2	포르투갈	79		영국	57	28=	오스트리아	42
3	캐나다	72	16	덴마크	53		크로아티아	42
4	핀란드	69	17	프랑스	51		폴란드	42
5=	오스트레일리아	68	18=	그리스	49	31=	보스니아	41
	네덜란드	68		아일랜드	49		불가리아	41
7	벨기에	67	20	슬로베니아	48	33	리투아니아	40
8	노르웨이	66	21=	체코	46	34	일본	38
9	스페인	63		에스토니아	46	35	몰타	37
10	미국	62	23=	헝가리	45	36	슬로바키아	36
11	이탈리아	60		루마니아	45	37	키프로스	35
	한국	60	25=	아르메니아		38	라트비아	31
13	룩셈부르크	59		마케도니아		39	터어키	24

표 2 는 주요 8 개 국(스웨덴, 캐나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의 분야별 평가이다. 일본은 노동시장, 가족결합, 영주허가의 점에서는 평균이지만 국적취득과 정치참가는 낮고 교육은 대단히 낮으며 차별금지 는 지극히 낮다. 일본의 평가가 낮은 국면의 지수를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고 일본의 평가보다 낮은 나라의 지수는 밑줄을 그어 표시했다.

표 2 이민종합정책지수 2010 (특정국의 분야별 평가)

나라	스웨덴	캐나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
노동시장	100	81	68	<u>55</u>	77	<u>49</u>	<u>49</u>	62
가족결합	84	89	67	54	60	52	52	51
교육	77	71	55	58	43	29	29	19
정치참가	75	38	45	53	64	44	44	27
영주허가	78	63	<u>50</u>	<u>31</u>	<u>50</u>	<u>46</u>	<u>46</u>	58
국적취득	79	74	61	59	59	59	59	33
차별금지	88	89	89	86	48	77	77	14
종합	83	72	62	57	57	51	51	38

148 의 정책지표에 의거한 질문에 삼지선다로 답을 해 100 점, 50 점, 0 점을 매겼다. 1 개의 지표에 최대 8 개까지 상세한 질문이 있는 것도 있어 그 경우에는 평균점으로 매기기 때문에 실제 질문은 200 개 이상이 된다. 7 개의 정책분야는

각각 4 개씩 합계 28 개의 국면으로 나뉘어진다. 따라서 4 개 내지 5 개의 지표가 1 개의 국면을 구성하고 4 개의 국면이 1 개의 분야를 구성한다. 이하 국면마다 일본의 문제를 중심으로 본다.

1 노동시장참가	스	캐	미	영	독	프	한	일
1.1 액세스(access)	100	90	100	80	<u>70</u>	<u>20</u>	70	80
1.2 일반적인 지원에의 액세스	100	83	83	67	<u>50</u>	<u>50</u>	67	67
1.3 외국인노동자 지원에의 액세스	100	50	25	25	88	63	88	13
1.4 노동자의 권리	100	100	<u>63</u>	<u>50</u>	100	<u>63</u>	100	88

노동시장참가 분야의 최초의 액세스 국면에서는 일본은 재류자격마다 직종이 한정되고 가족체재의 고용에서는 자격외 활동허가가 필요하다⁸. 하지만 민간고용⁹이나 공권력행사 등을 제외한 공무취임¹⁰이 가능하다.

또는 영주자 등이나 투자경영 등 자영업이 인정되는 재류자격은 일부이지만¹¹ 특별한 제약은 없어서¹² 노동시장에의 액세스 국면 전체에서 독일이나

8. 제 1 지표는 국민과 같은 고용액세스가 인정된 외국인의 유형이다. 1 은 영주자, 일정기한 취로허가자(계절노동자를 제외), 가족체재자이다. 미국, 스웨덴. 2 는 가족체재자나 일부의 일정기한 취로허가자를 제외하는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일본에는 (특별)영주자, 일본인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에 한해 국민과 같은 액세스가 인정된다. 참조 入管法 2 条の 2 第 2 項). 3 은 영주자 뿐이다. 한국.(한국에서는 가족체재자나 단기체재자에게는 일정의 제약이 있다).

9. 제 2 지표는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의 외국인의 민간고용이다. 1 의 허가증에 명시된 이외의 제약은 없다.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2 는 언어시험등 다른 제약조건이 있다. 3 의 경우는 특정분야는 국민이나 EU 시민에 한한다. 프랑스.

10. 제 3 지표는 EU 시민 이외의 외국인의(공권력 행사를 제외) 공적부분에 EU 시민과 같이 취업할 수 있다. 1 은 공권력 행사와 일반적인 국가이익 보호의 제약 뿐이다. 일본, 한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 (일본에서는 「당연의 법리」라는 행정해석과 2005 년 1 월 26 일 최고재판소의 판결에서 말하는 「주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형성하고 그 범위를 확정하는 등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중요한 시책에 관한 결정을 행하고 또는 이런 것에 참획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사람」은 원칙으로서 일본 국민의 취임이 「상정」되어 있다는 「상정의 법리」에 의한 제약이 있다.(한국에서는 국가안전보장상의 제약만이다). 2 는 다른 제약도 있다. 독일. 3 은 국민 뿐이다. 프랑스

한국보다 높이 평가 된다.(취로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연수생은 사실상 썩 노동력이

되고 있는 일본의 특수한 문제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평가는 낮아질 것이다. 기능실습생도 포함해 계절노동자와 같은 특별한 문제로서 평가항목에서 제외했다).

일반적인 지표는 직업소개에의 액세스¹³는 가능하지만 직업훈련¹⁴에는 취로가능한 사람에게 제한된다. 출신국의 자격¹⁵이 공정하게 평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
11. 제 4 지표는 국민과 같은 자영업에 액세스가 인정된 외국인의 유형이다. 1은 영주자, (계절노동자를 제외한) 일정기한의 취로허가자, 가족체재자이다. 미국, 캐나다, 스웨덴. 2는 가족체재자나 일부 일정기한 취로허가자를 제외. 일본, 한국, 영국, 독일. 3은 영주자 뿐이다.
 12. 제 5 지표는 국민과 같은 조건에서의 외국인의 자영업 승인이다. 1은 허가증이 명시한 이외의 조약은 없다. 일본, 한국,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2는 언어시험 등의 다른 제약 조건이 있다. 3은 특정 분야는 국민이나 EU 시민에 한한다.
 13. 제 6 지표는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외국인의 직업소개나 헬로 워크(일본의 직업안정소)에의 액세스이다. 1은 국민과 같은 취급을 한다.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2는 일정의 제약이 있다. 프랑스, 한국.(2009년 개정된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6조 2항에는 한국인 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구인 조건을 갖춘 한국인을 우선적으로 직업소개하는 규정이 있다). 3은 불평등 취급이다.
 14. 제 7 지표는 평등한 교육과 직업훈련에 액세스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유형이다. 1은 영주자, (계절노동자를 제외한) 일정기한 취로허가자, 가족체재자이다. 프랑스, 스웨덴. 2는 가족체재자나 일부의 일정기한 취로허가자를 제외.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3은 영주자 뿐이다.
 15. 제 8 지표는 국외에서의 학력과 자격의 승인이다. 1은 국민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 일본, 한국, 미국, 캐나다, 스웨덴. (일본은 학위는 승인하고 있다. 한편 외국의 자격과 일본의 자격의 구별이라고 생각해 2001년의 법무성고시 579호에 의한 일정국가의 기술자 자격을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여 일본을 2로 했지만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가진 국민과 외국인의 차이를 묻는 질문이 있다면 1이 된다. 캐나다에서는 외국자격을 평가와 승인에 관해 범캐나다란 틀에 의해 국제적으로 훈련한 후보자와 캐나다인은 평등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질문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관련하지 않은 점이 있다). 2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는 경우이다. 영국, 독일. 3은 승인은 안하지만 낮게 평가한다. 프랑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도 국외의 기술이나 자격 승인의 촉진¹⁶ 이 부족하다. 일본계 집주지역을 시작으로 일부에서 볼 수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실업대책¹⁷ 등 노동분야의 통합정책이¹⁸ 부족하다. 헬로워크에의 액세스 지원¹⁹ 은 개선이 보인다.

노동자의 권리에 관해서는 노동조합의 가입²⁰ 은 인정된다. 사회보장예의 평등한 액세스는 생활보호 수급자격만이 영주자 등에 한정된다²¹. 취로가 가능하다면

16. 제 9 지표는 국외의 기술과 자격 승인의 촉진이다. 1은 공정한 직업환경의 가이드 라인을 첨가해 기술과 자격 승인의 촉진기관을 갖는, 영국, 캐나다, 스웨덴. 또는 자격 평가수속의 정보 조항을 갖는, 한국, 미국, 독일. (영국에는 전국 학술자격 인정정보센터가 있다. 한국의 국가기술자격법 12 조 (국가 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 및 동 21 조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상호인정) 참조). 2는 상기의 어느 쪽인가를 가진다. 3은 어느 쪽도 없다. 일본.

17. 제 10 지표는 노동시장예의 외국인 통합조치이다. 1은 외국인 실업감소의 특별대책, 외국인 직업훈련촉진 특별대책, 언어습득에 따른 고용개선대책을 갖고있는, 캐나다, 독일, 스웨덴. 2는 상기의 어느 쪽인가를 가진, 일본, 한국. (또한 일본에 있어서의 일본계집주 지구를 중심으로 한 일본계취로준비사업은 일본계 외국인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15%밖에 안 되지만 일본계 이외의 다른 외국인에게도 언어습득에 의한 고용개선대책을 하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노동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 11 조 참조). 3은 어느 쪽도 없다. 미국, 영국.

18. 제 11 지표는 노동시장예의 외국인 통합책이다. 1은 이민은 젊은이 및 여성에 대한 특별대책을 하고 있는, 한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한국에는 (a)다문화가족의 젊은이의 직업훈련을 위한 학교가 있고 (b)다문화가족지원법 12 조 2 항 4 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 알선」 업무를 정하고 있다. 2는 상기의 어느 쪽인가를 갖고 있다. 3은 어느 쪽도 없는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19. 제 12 지표는 헬로워크에의 액세스 지원이다. 1은 상담조언등 뉴커머 통합책, 이민담당 스텝의 훈련을 하고 있는, 한국, 독일, 스웨덴. (한국의 외국인노동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 24 조(외국인노동자관련단체 등에의 지원) 및 동 24-2 조(외국인노동자권리보호협의회) 참조). 2는 상기 어느 쪽인가를 하고 있는 일본, 미국, 프랑스. (일본의 헬로워크는 외국인이 집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구직자 전문의 상담원이나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등의 통역을 배치하게 되었기에 2로 변경한다). 3은 어느 쪽도 없는 영국, 캐나다.

20. 제 13 지표는 노동조합이나 노동관계조정기관예의 참가이다. 1은 국민과 같은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또한 일본에서는 노동조합법 5 조 4 항 2 조에 「누구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인종, 종교, 성별, 문벌 혹은 신분에 의해 조합원될 자격을 빼앗길 수 없다」 라고 정해져 있어, 국적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14 조 및 노동기준법 3 조에 비추어 국적차별 금지도 노동조합의 민주성의 요건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은 2009 년에 개정된 외국인노동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 22 조에 있어서 「사용자는 외국인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라고 정해져 있다. 2는 선거로 뽑히는 지위에 제한이 있는 프랑스. (또한 프랑스에서는 EU 시민이외에는 상공회의소나 노동심판소 등에의 피선출권이 없다). 3은 그 외의 제한이 있다.

국민과 같은 노동 조건이다²².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제공도 포털사이트 등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²³.

21. 제 14 지표는 외국인은 (실업수당, 노령연금, 장애수당, 출산휴가, 가족수당, 사회부조 등의) 사회보장에 평등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가이다. 1은 모든 국민과 같다. 미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한국. (단 미국에서는 1996년 개인책임·취로기회조정법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에 의해 군인, 난민, 비호신청자 등을 제외한 일정한 외국인에게는 장애자나 고령자를 위한 보조적소득보조 (SSI) 및 저소득자를 위한 푸드스탬프 등의 수급이 안된다. 한국의 생활보호법에 해당하는 2000년에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조-2에서 수급자격자 「국내에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중인 사람, 대한민국국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국적인 직계존속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4조 내지 5조에는

구체적으로 「본인 또는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배우자가 임신중인 사람.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미성년자 (계부, 계모관계와 양자결연관계도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사람 중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은 2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2는 적어도 1 분야에서는 불평등하다. 일본의 생활보호는 1991년 10월 25일 후생성사회국보호과기획법령 계장의 구두 지시에 의해 입관법 별표 제 2의 영주자등에 한한다. 3은 복수의 분야에서 불평등하다. 영국. (영국에서는 취로자격이 있어서 국민보험에 가입한 자는 실업보험이나 출산수당 등을 수급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수당이나 가족수당, 사회부조는 난민이나 상호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의 출신자 등을 제외하고 비영주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22. 제 15 지표는 외국인은 평등한 노동조건(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 계약해지나 해고의 경우 대우, 보수·월급,납세)을 받고 있는가이다. 1은 모두 국민과 같다. 일본, 한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2는 적어도 1 분야에서 불평등이다. 3은 복수의 분야에서 불평등이다. 미국.

23. 제 16 지표는 나라(또는 주) 레벨에서의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제공이다. 1은 이주노동자 또는 개인 기준의 고용자 용의 국가의 정보정책이 있는 일본, 한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일본은 후생노동성이 「외국인노동자의 고용관리의 개선 등에 관한 사업주가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지침」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다. 한국에서는 직업안정소가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보장을 담당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법률 24조의 2)).

2 가족초청	스웨덴	캐나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
2.1 유자격자	100	90	50	40	55	35	60	60
2.2 자격취득의 요건	58	67	58	58	57	34	67	67
2.3 자격의 안정	88	100	75	75	63	63	63	38
2.4 자격과 연결된 권리	92	100	83	42	67	75	50	42

가족초청에 대한 유자격자는 1 년이하의 체제에서도 초청이 가능하지만 24 학생과 문화활동 이외의 취로를 할 수 없는 재류자격같은 일정의 단기체제자는 제외된다 25. 현행의 배우자가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내연관계 더 나아가 동성의 파트너 초청도 과제이다 26. 배우자는 미성년이어도 초청할 수도 초청 받을 수도 있다 27. 미성년의 자녀의 초청이 인정될 뿐 아니라 28출신국에 부양할 수 있는 친족이 없는 경우의

2 는 이주노동자 또는 개인기준의 고용자용의 국가의 비항상적 또는 일부 주의 정보정책이 있는 미국. 3 은 적극적인 정보정책이 없는 영국, 프랑스.

24. 제 17a 지표는 통상의 정규체제자의 가족초청 자격이다. 1은 1년 이하의 체제기간을 요건으로 한다. 일본, 한국, 캐나다, 스웨덴, 영국, 미국. (일본, 한국(F1 : 방문동거, F3 : 동반)은 초청하는 사람의 체제기간의 요건은 필요 없다, 영국은 6 개월 이상의 체제기간이 필요하다. 미국은 영주자는 체제조건 없이 가족을 초청할 수 있지만 연간 배우자 비자 수는 114,200 이다). 2 는 1 년보다 긴 체제기간을 요건으로 한다.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18 개월) 3 은 2 년 이상의 체제기간을 요건으로 한다. 독일.

25. 17b 의 지표는 가족초청에서 고려하는 서류이다. 1은 어떤 체제허가에도 좋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2 는 일정한 체제기간을 제외한다. 일본, 한국. (일본의 연수·기능실습, 한국의 D3 : 기술연수는 가족초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은 영주허가이다. 미국, 캐나다.

26. 제 18a 지표는 배우자 이외의 파트너의 자격이다. 1 은 내연관계와 등록 파트너 양쪽이다. 영국, 캐나다, 스웨덴. 2 는 상기의 어느 쪽 또는 동성애자 등 일정의 파트너이다. 독일. 3 은 어느쪽도 가족초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본, 한국, 프랑스, 미국. (단 미국은 동성혼을 인정하는 2013년 최고재판소의 판결후 동성의 파트너의 초청도 인정하게 되었다).

27. 제 18b 지표는 초청인과 배우자의 연령제한이다. 1 은 미성년자(18 세 이하)여도 가능하다. 일본, 한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2 는 예외가 있는 형태로 18 세 이상 21 세 이하이다. 3 은 21 세 이상이거나 예외없이 18 세 이상 21 세 이하로 한다. 영국. (영국에서는 2008 년에 (강제 결혼을 막기 위해) 연령제한이 18 세에서 21 세로 올라 갔으며 배우자 등으로 초청하는 쪽이나 초청 받는 쪽 어느 쪽이건 18 세부터 20 세의 경우에는 혼인등이 되었어도 초청이 제한된다).

부모나 조부모의 초청의 제도화도 필요하다²⁹. 부양하고 있는 성인인 자녀의 초청은 인정된다³⁰. 자격취득의 요건은 국외에 거주하는 가족에의 출국 전의 언어요건은 없고³¹ 통합 조건도 없다^{32 33}

28. 제 19 지표는 미성년의 자녀의 초청이다. 1 은 미성년 자녀, 양자, 공동 친권의 자녀 어느 쪽도 초청이 가능하다.일본, 한국, 미국, 캐나다, 스웨덴. (미국은 8 USC1101(b)에서 자녀를 일반적으로 21 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지만 데리고 온 아이나 양자는 16 세가 되기 전에 그 관계가 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2 는 미성년의 자녀와 양자만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독일은 16 세 이하다). 3 은 미성년의 자녀와 양자만의 일정의 제약도 있다.

29. 제 20 지표는 부양하고 있는 존속의 초청이다. 1 은 인정된다. 캐나다, 스웨덴. 2 는 조건이 붙어 인정된다. 한국, 독일. (한국은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거나 한국계인 것이 조건이다. 독일은 체재법 36 조 2 항은 「몹시 가혹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의 초청요건이 주어진다). 3 은 인정 안된다.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또한 일본에서는 예외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의 초청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조건은 공표되어 있지 않다).

30. 제 21 지표는 부양하고 있는 성인의 된 자녀의 초청이다. 1 은 인정된다. 일본, 캐나다, 스웨덴. 2 는 조건이 붙어 인정된다. 한국, 미국, 독일. (한국에서는 경제적으로 자립했거나 한국계인 것이 조건이다. 미국은 8 USC1153 (a)(1)이 연간 114,200 의 비자를 배우자, 미성년 자녀, 미혼의 21 세 이상의 자녀에게 발급된다). 3 은 인정되지 않는다. 영국, 프랑스.

31. 제 22a 지표는 국외에 거주하는 가족의 출국전의 언어 대책이다. 1 은 없음 또는 임의의 코스이다. 일본,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 (일본과 한국은 필요 없다). 2 는 언어코스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프랑스의 입국체재 비호법전 L.411-8). 3 은 언어시험도 포함한다. 독일. (더욱 독일에서는 배우자만에게 쉬운 독일어의 의사소통의 언어요건이 주어지지만 일본, 한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및 이스라엘의 국적을 가진 배우자, 고도전문기술자, 연구자 및 자영업자의 배우자의 경우는 면제된다).

제 22b 지표는 언어레벨이다 1 은 A1 이하이다. 프랑스, 독일.(프랑스는 A1 이다). 2 는 A2 정도이다. 3 은 B1 이상 또는 행정재량이다.

32. 제 22c 지표는 출국전의 사회문화적인 통합대책이다. 1 은 없음 또는 임의의 정보 또는 코스를 듣는다. 독일. 2 는 통합코스를 들을 필요가 있다. 프랑스. 3 은 통합시험에 합격할 필요가 있다.

33. 제 22d 지표는 출국전 요건의 면제이다. 1 은 교육자격 등의 개인 능력의 고려, 장애가 있는 사람의 그룹 면제의 양쪽이 있다. 프랑스, 독일. 2 는 어느 쪽인가 한 가지이다. 3 은 어느쪽도 없다.

제 22e 지표는 출국전 요건의 실시자이다. 1 은 언어 또는 교육전문가로 정부에서

초청인이나 가족에게 입국후에도 언어요건³⁴ 이나 통합요건³⁵ 이 없고 주거공간
요건도 없다³⁶. 하지만 생계유지 요건³⁷ 이 있어 신청대기 기한이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하지만³⁸ 신청비용은 필요없다³⁹.

독립한 사람이다. 독일. 2 는 언어 또는 교육의 전문가로서 정부에서 독립하지 않은
사람이다. 프랑스. 3 은 언어 또는 교육의 전문가도 정부에서 독립한 사람도 아니다.

제 22f 지표는 출국전 요건의 비용이다. 1 은 무료 또는 저액이다. 프랑스. 2 는 통상의
행정수속 비용이다. 3 은 고액이다. 독일.

제 22g 지표는 출국전 필요한 요건을 준비하는데 대한 지원이다. 1 은 공표되어
사용되는 질문항목나 학습가이드에 기준을 둔 평가 및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코스
양쪽이다. 독일. 2 는 어느 쪽이든 한 가지이다. 프랑스. 3 은 어느 쪽도 아니다.

제 22h 지표는 지원비용이다. 1 은 무료 또는 저액. 프랑스. 2 는 통상의 행정수속 비용이다.
3 은 고액. 독일. (독일은 1 시간 1 유로로 600 시간 600 유로)

34. 제 23a 지표는 초청하는 가족들의 입국후 언어요건이다. 1 은 없거나 임의의 코스를
밟는다.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 2 는 언어코스를 밟을 필요가 있다. 프랑스.
3 은 언어시험도 포함. 독일.

제 23b 지표는 언어레벨이다. 1 은 A1 이하다. 프랑스. 2 는 A2 정도이다. 3 은 B1 이상 또는
행정재량이다. 독일은 B1

35. 제 23c 지표는 초청가족의 입국 후 사회문화적 종합대책이다. 1 은 없거나 임의의 정보
또는 코스를 밟는다. 2 는 통합코스를 밟을 필요가 있다. 프랑스. 3 은 통합시험도 포함.
독일.

제 23d 지표는 언어·통합요건의 면제이다. 1 은 교육자격 등 개인능력의 고려,
장애인의 그룹 면제 등 양쪽이 있다. 독일. 2 는 어느 쪽인가 한쪽이다. 프랑스. 3 은 없다.

제 23e 지표는 언어·통합요건의 실시자이다. 1 은 언어 또는 교육전문가로 정부에서
독립한 사람이다. 독일. 2 는 언어 또는 교육전문가이지만 정부에서 독립하지 않은 사람.
프랑스. 3 은 언어 또는 교육전문가도 정부에서 독립한 사람도 아니다.

제 23f 지표는 언어·통합요건의 비용이다. 1 은 무료 또는 저액. 프랑스, 독일. 2 는
통상 행정수속의 비용이다. 3 은 고액.

제 23g 지표는 언어·통합요건의 지원이다. 1 은 공표되어 사용되는 질문리스트나
학습가이드에 기준을 둔 평가 및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코스 양쪽이다. 독일. 2 는
어느 쪽인가 한 가지이다. 프랑스. 3 은 어느 쪽도 아니다.

제 23h 지표는 지원 비용이다. 1 은 무료 또는 저액. 프랑스. 2 는 통상 행정수속
비용이다. 독일. 3 은 고액

36. 제 24 지표는 주거요건이다. 1 은 주거요건이 없음. 일본, 한국, 미국, 캐나다. 2 는
일반적인 건강 동시에 안전한 기준을 가진 주거가 필요하다. 영국, 독일, 스웨덴. 3 은
보다 더 상세한 요건이 필요하다. 프랑스.

자격 안정에 대해서는 체재허가의 유효기간은 많은 경우 초청인과 같이 1년 이상이다⁴⁰. 불허나 취소, 갱신거부의 이유로서 실업 등의 경우도 포함⁴¹. 단 취소나 갱신 거부시에는 가족관계의 안정, 초청인의 체재기한, 출신국과의 연결, 육체적·정신적 폭력의 유무를 고려한다⁴². 불허·취소의 경우 이유개시도 불복신청도 법적보장으로서 정해져 있지 않다⁴³. 자격과 연결된 권리에 대해서는

37. 제 25 지표는 생계요건이다. 1은 생계요건이 없거나 무소득은 제외되지만 생활보호 보다는 낮은 레벨이다. 2는 생활보호보다는 높은 레벨이지만 고용과 연결할 필요는 없다. 일본,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일본은 풀타임의 정규고용이 아니어도 1000만엔 정도의 재산이 있으면 된다. 한국에서는 생활보호 보다는 높은 요건이 있지만 수입원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 3은 고용과 연결되어 있어 생활보호수급자는 제외 프랑스.

38. 제 26 지표는 신청대기 기한이다. 1은 6개월 이하. 독일. 2는 6개월을 넘지만 규정이 있다. 프랑스. 3은 규정이 없다. 일본,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

39. 제 27 지표는 신청 또는 발행 비용이다. 1은 무료, 일본. 2는 그 나라의 통상 수속 비용이다. 한국, 영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한국은 비자신청료 뿐이다. 미국에서는 제일 비싼 재류자격 변경료가 1,010 달러. 스웨덴에서는 어른 1,000 크로나, 어린이 500 크로나, 영주의 경우는 어른 500 크로나, 어린이 250 크로나). 3은 고액이다. 미국,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첫회 300~340 유로, 갱신은 70~110 유로, 10년 체재허가는 110 유로이다).

40. 제 28 지표는 허가의 유효기간이다. 1은 초청인과 같이 갱신이 가능하다.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 (미국은 영주허가는 갱신이 필요없지만 카드는 10년에 무효가 된다). 2는 초청인과 같지는 않지만 1년 이상에서 갱신 가능하다. 일본, 프랑스. 독일. 3은 1년 미만 중에 신규로 응모를 해야만한다.

41. 제 29 지표는 불허나 취소, 갱신거부의 이유이다. 1은 공공·국가의 안전과 허위의 판명만을 이유로 한다. 캐나다. 2는(3년 미만의)가족관계의 파탄도 포함. 한국, 미국, 스웨덴. 3은 실업 등의 이전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42. 제 30 지표는 취소나 갱신거부시에 고려하는 이유이다. 1은 가족관계의 안정, 초청인의 체재기한, 출신국과의 연결, 육체적·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함한다.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2는 상기의 어느 쪽인가이다. 미국. 3은 어느 쪽도 고려하지 않는다. 한국.

43. 제 31 지표는 불허·취소의 경우의 법적보장이다. 1은 이유개시, 불복신청, 독립행정기관이나 재판소에의 대리가 보장되어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단 영국에서는 법률부조 비용의 제한이 있다). 2는 적어도 최초의 2개가 보장되어 있다. 3은 최초의 2개 중 어느 쪽인가 또는 어느 쪽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일본, 한국.

배우자와 성인자녀의 경우 자율적인 거주⁴⁴, 또는 이혼, 사별, DV 피해경우의 자율적 거주⁴⁵, 초청인과 동거하는 다른가족경우의 자율적 거주가⁴⁶ 충분하지 않다.

성인가족의 경우 교육에의 액세스는 초청인과 같다⁴⁷. 고용이나 자영업에의 액세스는 자격외 활동 등의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다⁴⁸. 사회보장예의 액세스는 대부분 초청인과 같다⁴⁹. (또한 일본 입관법은 가족초청의 체계적 개념이 없는 문제가 있다)

44. 제 32 지표는 배우자와 성인자녀의 자율적 거주이다. 1은 3년 이하이다. 캐나다, 스웨덴. (캐나다는 즉시 영주자격을 가지다. 스웨덴은 배우자는 2년, 자녀는 5년의 체재를 요건으로 한다). 2는 3년 이상 5년 이하이다. 미국, 프랑스, 독일. (프랑스에서는 3년에 단기체재허가, 5년에 장기체재허가증 (carte de résident)). 3은 5년 이상이든지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다. 일본, 한국, 영국. (영국에서는 재류기간은 필요없지만 충분한 생계여건과 자녀가 있는지, 18세 이상의 경우에는 충분한 생계요건이 필요하다.

45. 제 33의 지표는 이혼, 사별, DV의 피해경우의 자율적 거주이다. 1은 자동적으로 인정된다. 캐나다. 2는 (거주기간이나 혼인 등의) 일정 조건을 기준으로 인정된다.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한국은 배우자의 죽음이나 이혼에 의해 혼인이 종결되었다면 외국인인 혼인의 파탄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해당 외국인은 F-6-3으로 변경해야만한다). 3은 없다. 일본. (또한 일본도 이혼, 사별, DV 피해의 경우의 거주가 인정되는 경우인 있지만 그 조건이 공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46. 제 34 지표는 초청인과 동거하는 다른 가족 경우의 자율적 거주이다. 1은 3년 이하이다. 미국, 캐나다, 스웨덴. 2는 3년보다는 길지만(통상의 영주허가 등) 일정 조건하이다. 일본, 프랑스. 3은 없다. 한국, 영국, 독일.

47. 제 35 지표는 성인가족의 교육에의 액세스이다. 1은 초청자와 같다. 일본,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2는 다른 조건이 붙음. 3은 인정되지 않음.

48. 제 36 지표는 고용이나 자영업에의 액세스이다. 1은 초청인과 같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2는 다른 조건이 붙음. 일본, 한국. (또한 일본에서는 재류자격이 가족체재나 특정활동인 경우 노동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자격외 활동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고용은 제한되지만 자영업은 제한되지 않음). 3은 인정되지 않음.

49. 제 37 지표는 사회보장·사회부조에의 액세스이다. 1은 초청인과 같다. 일본, 한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2는 다른 조건이 붙음. 3은 인정되지 않음. 영국.

3 교육	스웨덴	캐나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
3.1 액세스	57	64	86	57	43	50	79	43
3.2 특별한 필요	90	90	60	63	30	13	63	27
3.3 새로운 기회	88	63	31	19	50	19	50	0
3.4 전체에의 이문화관 교육	75	67	42	92	50	33	33	8

교육에의 액세스에서 취학전교육에의 액세스는 재류자격과 관계없이 인정된다. 하지만 이민의 자녀는 취학촉진의 지원책은 없다⁵⁰. 외국인 아동생도가 취학의무의 대상이 되어있지 않은 것부터 의무교육에의 액세스가 반드시 충분한 것은 아니다⁵¹. MIPEX에 대해서 50점의 평가가 주어진 「모든 아동에의 목시의 의무」란 평등한 액세스에의 법적인 장애가 없는 것을 가리키며 일본도 이것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 이민오기 전의

50. 제 38 지표는 취학전교육에의 액세스와 지원이다. 1은 재류자격과 관계없이 취학전교육에의 액세스를 인정해 이민자녀에의 취학촉진 지원책을 강구한다. 한국, 미국(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 10조). 2는 어느 쪽인가 한 개이다.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일본에서는 재류자격에 관계없이 취학전교육에의 액세스는 인정하고 있지만 외국인 자녀의 취학을 촉진하는 특별한 언어수업 등의 지원책은 부족하다. 영국에서는 취학전교육에 이민자녀도 동등하게 참가할 수 있지만 이민자녀의 참가율을 높이는 시책은 없다. 캐나다에서는 액세스를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무료로 액세스를 인정한다. 독일에서는 비정규체재자의 법적인 액세스를 인정하지 않지만 이민자녀의 취학을 촉진하는 캠페인·이문화간교육의 지원책이 있다. 스웨덴에서도 비정규체재자의 법적인 액세스를 인정하지 않지만 이민자녀는 모국어의 지식을 향상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단 2013년 7월부터 스웨덴에서는 비정규체재의 자녀도 국민과 동등하게 액세스가 인정되었다). 3은 어느 쪽도 없다.

51. 제 39 지표는 의무교육에의 액세스이기도 하고 재류자격에 관계없이 학령기 아동의 모두에게 법적인 권리가 있는가이다. 1은 재류자격에 관계없이 국민과 동등하게 명시된 의무가 법에 정해져 있다. 한국, 미국, 캐나다.(캐나다의 교육법 21조 1항에 9월 학교가 시작하는 날에 6세인 「모든 아동」의 취학을 정하고, 30조 1항에 자녀를 취학시키지 않은 부모나 보호자에의 벌칙을 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Plyler v. Doe, 457

U.S. 202 (1982)에 의해 최고재판소의 관례상 비정규체재자의 의무교육에의 액세스를 인정하고있다). 2는 모든 아동에의 목시의 의무이다.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일본에서는 외국인 자녀의 경우 교육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어 있지만 의무는 주어지지 않음. 스웨덴은 비정규체재자는 교육을 받을 의무는 주어지지 않음. 3은 이민은 일정 범주에의 제약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교육이나 국외에서의 언어자격의 평가⁵²는 학교 스태프가 독자적으로 평가할 뿐이고 공통의 평가기준은 없으며 훈련된 스태프를 임용하는 일도 없다. 중등교육에의 액세스의 지원은⁵³ 일단 있다. 직업훈련에의 액세스⁵⁴는 학생에 대한 정책도 고용주에 대한 정책도 불충분하다. 고등교육에의 액세스나 참가 지원⁵⁵은 재류자격에 관계없이 액세스는 가능하지만, 참가 촉진책은 없다. 모든 레벨의 교육에의 조언이나 안내⁵⁶는 의무교육이기는 하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한정되어 있다.

52. 제 40 지표는 이민오기 이전의 교육이나 국외에서의 언어자격 평가이다. 1은 표준화된 평가수단과 훈련된 스태프가 있다. 프랑스. 2는 어느 쪽인가 한 쪽이다.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한국은 표준화된 평가수단). 3은 어느 쪽도 없다. 일본, 독일, 스웨덴.

53. 제 41 지표는 중등교육에의 액세스의 지원이다. 1은 중등교육에의 참가촉진책, 고등교육에의 진학촉진책의 양쪽이 있다.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스웨덴. (한국아동복지법 18조에 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은 다문화가족 또는 외국인 청소년에게 가이드스를 제공한다). 2는 어느 쪽인가 한 쪽이다. 캐나다, 독일. 3은 어느 쪽도 없다. 프랑스.

54. 제 42 지표는 직업훈련에의 액세스이다. 1은 재류자격에 관계없이 이민은 국민과 평등하게 직업훈련에의 액세스가 보장되어 이민학생의 직업훈련에의 참가촉진책이거나, 이민학생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도록 고용주에게 촉구하는 정책이거나 적어도 어느 쪽인가를 행한다. 미국, 캐나다. 2는 상기의 3개 중 적어도 하나가 있다.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 6조(생활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3은 어느 쪽도 없다. 일본.

55. 제 43 지표는 고등교육에의 액세스나 참가지원이다. 1은 재류자격에 관계없이 이민은 국민과 평등한 고등교육에의 액세스가 보장되며 이민학생에의 참가촉진책이 있다. 2는 어느 쪽인가 한 쪽이다. 일본,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한국의 대학은 다문화가족학생 입학은 촉진하고 있지만 비정규체제자의 입학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3은 어느 쪽도 없다. 캐나다.

56. 제 44 지표는 모든 레벨의 교육에의 조언이나 안내이다. 1은 이민출신국의 모국어로 교육제도 소개문. 이민학생에의 오리엔테이션, 이민 가족에의 교육안내나 조언에 관한 통역 서비스 조항이다. 한국, 미국, 캐나다, 스웨덴. 2는 상기 3개 중 1-2개가 있다.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3은 일반적인 지원뿐으로 어느 것도 없다.

특별한 필요에 대해서는 뉴커머 학생에의 도입 프로그램이 제도화 되어있지 않고 부모가 참가하여 국가나 학교제도에 대해 배우는 것도 없다⁵⁷. 외국인 학생의 언어 지원을 위한 특별한 조항⁵⁸은 의무교육에의 일본어 특별 지원은 있지만 취학전 교육에는 없다.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⁵⁹는 불충분하다.

다양한 출신국 모국어로서 입학안내를 준비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다. 번역·통역의 권리를 규정하는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아동학생 수만의 통계조사도 불충분하다. 외국인 아동학생의 교육상황에 초점을 둔 정책⁶⁰은 학습지원을 시작은 했지만 지원정책이 결여된다.

57. 제 45 지표는 뉴커머 학생에의 도입 프로그램이 있고, 그 가족이 국가나 학교제도에 관해 학습하는 조항이다. 1은 도입 프로그램의 존재와 부모의 참가 다 있다. 캐나다, 스웨덴. 2는 도입 프로그램 뿐이다. 3은 어느 것도 없다. 일본,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58. 제 46a 지표는 이민학생의 교육에 관한 언어지원 조항이다. 1은 의무교육, 취학전 교육이 다 있다. 한국, 미국, 캐나다, 스웨덴. 2는 어느 쪽인가 1개가 있다.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에서는 2009년 「정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대책 추진에 대하여」(정부 정주외국인 시책 추진회의) 중에 문부과학성은 「외국인 아동 학생을 받아 들이는 공립학교에 있어서 외국인 아동학생을 위한 일본어지도 교실 등을 설치하여 일본어 지도나 적응 지도를 적절하게 행할 것」를 교육위원회에 주지하도록 통지하였기에 3에서 2로 변경했다). 3은 조항이 없음.

제 46b 지표는 언어 레벨이다. 1은 일상회화 레벨과 학습언어 레벨의 양쪽이다. 일본, 한국, 미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일본에서는 2006년 문부과학성이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외국인 아동학생」의 정의로 일상회화뿐만 아니라 학습언어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 학생이라고 하도록 되었기에 2에서 1로 변경했다). 2는 어느 쪽인가 한 쪽이다. 영국, 프랑스. 3은 레벨의 규정이 없음.

제 46c 지표는 질의 레벨이다. 1은 제 2언어 레벨, 전문교원, 국가의 커리큘럼의 기준 중 2개가 있다. 미국, 캐나다, 스웨덴. 2는 어느 것이든 1개가 있다. 3은 어느 것도 없다. 일본,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59. 제 47 지표는 이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 1은 성별이나 출신국 등의 다양한 집단의 조사가 있다. 영국, 독일, 스웨덴. 2는 1개의 집단만의 조사가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인 양친을 둔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 다문화가족의 아이, 외국인의 아이 등의 조사). 3은 일반적인 조사가 있을 뿐이다. 프랑스.

60. 제 48 지표는 이민집단의 교육상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1은 학습지도와 재정지원 양쪽의 체계적인 조항이 있다.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 (한국의 다문화가족 지원법 12조(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지정 등)참조). 2는 어느 쪽인가

하나가 있다. 일본. 3은 어느 쪽도 없다. 프랑스, 독일.

외국인 아동학생을 위한 교원의 훈련⁶¹은 채용 전에도 채용 후에도 불충분하다.

출신국의 모국어를 학습할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⁶². 자신 또는 부모의 출신국의 문화학습권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⁶³. 교육현장에서의 세그리게이션의 조사가 없다⁶⁴. 교육분야에서의 사회통합정책이 결여되어⁶⁵ 이민 온 부모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⁶⁶.

61. 제 49 지표는 외국인 아동학생을 위한 교원의 훈련이다. 1은 채용 전의 교육, 채용 후의 교육 양쪽이 있다. 한국, 영국, 캐나다. (한국의 다문화가족 지원법 13 조(다문화가족 지원업무관련 공무원의 교육) 참조). 2는 어느 것인가 한 가지가 있다. 미국, 프랑스, 스웨덴. 3은 어느 것도 없다. 일본 독일.

62. 제 50a 지표는 출신국의 모국어를 학습할 선택권이다. 1은 국가가 규정 또는 추장이 있다. 미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2는 양국가 간의 협정 또는 타국의 재정지원이 있다. 프랑스. 3은 없다, 일본, 한국, 영국.

제 50b 지표는 출신국 모국어 학습권의 내용이다. 1은 정규의 모국어수업, 전학생을 위한 외국어의 수업에 편입, 국가의 경비로서 과외 모국어수업 중 적어도 2개가 있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2는 상기 3개 중 1개가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3은 없다.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이 없다. 일본, 한국.

63. 제 51 a 지표는 자신 또는 부모 출신국의 문화학습권이다. 1은 정규수업, 전학생을 위한 수업에 편입, 국가의 경비로서 과외활동 중 적어도 2개가 있다. 한국, 캐나다, 스웨덴. (한국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18 조(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증진)참조). 3은 어느 것도 없다.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제 51b 지표는 출신문화의 학습권의 내용이다. 1. 정규의 수업, 전학생을 위한 수업에 편입, 국가경비로 과외수업 중 적어도 2개가 있다. 한국, 스웨덴. (한국에서는 정규수업, 국가경비로 과외수업). 2는 상기 3개중 1개가 있다. 캐나다. 3은 없거나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이 없음. 일본.

64. 제 52a 지표는 교육현장에서의 세그리게이션의 조사이다. 1은 다른 조사기관 별의 조사와 특별지원교육을 포함한 조사 양쪽이 있다. 미국, 영국, 독일. 2는 어느 쪽인가 한 쪽이 있다. 스웨덴. 3은 어느 것도 없다. 일본, 한국, 캐나다, 프랑스.

65. 제 52b 지표는 교육분야에의 사회통합 정책이다. 1은 이민학생이 적은 학교에의 정책, 이민학생이 적은 학교와 이민학생이 많은 학교와의 제휴 양쪽이 있다. 2는 어느 쪽인가 한 쪽이 있다. 스웨덴. 3은 없다. 일본,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66. 제 53 지표는 이민온 부모와 커뮤니티 아이들의 교육에의 지원책이다. 1은 자치단체에의 지원, 학교에의 지원, 이민온 부모가 학교운영에 참가 중 적어도 2개가 있다. 한국, 캐나다, 스웨덴.(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 12 조가 자치단체에의 지원하고 정부는 다문화가족의 젊은이를 지원하는 100개 이상의 학교를 지정하고 있다). 2는

상기 3 개중 1 개가 있다. 독일, 3 은 없다.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이문화교육도 학교 커리큘럼에 들어있지 않다⁶⁷.문화의 다양성을 장려하는 정책이 결여되어⁶⁸ 문화의 다양성에 맞는 커리큘럼⁶⁹ 이나 시간표등의 제도적 보장이 없다⁷⁰. 이민자 교원을 적극적으로 등용하여⁷¹ 이문화간 교육, 그외 다른 문화의 다양성을 장려하는 교육을 위한 교원의 훈련⁷² 을 하는 것 같은 교육정책이 결여되어 있다.

4 정치참가	스웨덴	캐나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
4.1 선거권과피선거권	100	0	17	50	0	0	67	0
4.2 정치적 자유	100	100	100	100	100	67	33	83
4.3 자문적기관	0	0	15	0	68	28	40	25
4.4 실시책	100	50	50	60	90	80	100	0

67. 제 54 지표는 이문화교육의 공식목표에 문화의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1 은 커리큘럼 상 단독과목으로서 또는 커리큘럼 전체를 통해 포함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스웨덴. 2 는 그 중 1 개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 미국, 독일. (한국에서는 커리큘럼 전체 중에 포함되어 있다). 3 은 없거나 또는 이문화간 교육이 문화의 다양성을 포함하지 않음. 일본, 프랑스

68. 제 55 지표는 문화의 다양성을 장려하는 국가의 정보정책이다. 1 은 각가의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의 임무의 일부로 주도하여 행해진다. 한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 5 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참조). 2 는 국가에서 임의로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의 주도로 행해진다. 미국, 독일. 3 은 없다. 일본.

69. 제 56 지표는 인구 다양성의 변화에 맞는 학교 커리큘럼이나 교재의 변화이다. 1 은 국가와 지방의 인구 상태에 맞는 커리큘럼의 변경, 이행상황의 조사와 평가 양쪽을 포함. 영국, 스웨덴. 2 는 전자뿐이다. 미국, 캐나다. 3 은 없다.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70. 제 57 지표는 종교 등을 배려한 시간표, 휴일, 종교활동, 드레스코드의 변경이다. 1 은 국가의 법이나 가이드라인에서 인정한다. 영국. 2 는 자치단체나 학교레벨에서의 재량으로 인정한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3 은 법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 한국.

71. 제 58 지표는 이민은 교원의 적극적인 등용이다. 1 은 이민자의 학습·이민자로서의 교육자격의 장려, 이민자의 교원으로의 등용 촉진 양쪽이다. 영국, 독일. 2 는 어느 쪽인가 한 쪽이 있다. 스웨덴. 3 은 없다. 일본, 한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72. 제 59 지표는 모든 교원에 대한 이문화간 교육을 포함한 문화의 다양성의 장려를 가르치는 훈련이다. 1 은 교원면허 취득에 필요한 사전훈련, 채용후 훈련의 양쪽이 있다. 캐나다. 2 는 어느 쪽인가 한 쪽이 있다.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한국에서는 채용후 훈련이 있다). 3은 없다. 일본.

정치참가는 국가⁷³, 도⁷⁴, 시군읍면⁷⁵ 어떤 레벨에도 선거권과 피선거권⁷⁶ 어떤 레벨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는 집회와 결사의 권리⁷⁷는 인정되어 외국인의 가입을 인정하고 있는 정당도 많고 정부가 금지하고는 있지 않다⁷⁸. 하지만 미디어의 창설에는 이어나 주주의 국민의 비율에 관한 일정한 제약이 있다⁷⁹.

외국인의 자문기관은 국가레벨에서는 아니지만⁸⁰ 현(縣)⁸¹이나 시정촌

73. 제 60 지표는 국가의 선거권이다. 1은 일정기간후에는 국민과 동권이다. 2는 상호주의 또는 일정한 국적에 한한다. 영국. 3은 없다. 일본, 한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74. 제 61 지표는 도의 선거권이다. 1은 5년 이하의 거주로 국민과 동권이다. 스웨덴, 한국. 2는 5년보다 길거나 상호주의등의 일정한 국적에 한한다. 영국. 3은 없다. 일본,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75. 제 62 지표는 시군읍면의 선거권이다. 1은 5년이하의 거주로 국민과 동권이다. 스웨덴, 한국. 2는 5년보다 길거나 상호주의등의 일정한 국적에 한한다. 영국, 미국. 3은 없음. 일본, 캐나다, 프랑스, 독일.

76. 제 63 지표는 시군읍면의 피선거권이다. 1은 무제한이다. 스웨덴. 2는 일정한 포스트나 상호주의등 일정한 제약이 있다. 영국. 3은 없다. 일본, 한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77. 제 64 지표는 집회결사의 권리이다. 1은 무제한이다. 일본,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2는 국민의 이사의 필요수 등의 일정한 제약이 있다. 3은 권리가 없다.

78. 제 65 지표는 정당가입 자격이다. 1은 국민과 동권이다.(정부에 의해 금지되어 있지 않다).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2는 내부의 대표선출에 제약이 있다. 3은 그 외의 제약이 있다. 한국.(한국에서는 국민만이 당원이 될 수 있다).

79. 제 66 제약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미디어 창설이다. 1은 제약이 없다.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2는 국민과 다른 무엇인가의 제약이있다. 일본. 3은 무권리이다. 한국, 프랑스.

80. 제 67a 지표는 국가 레벨에서의 외국인자문기관이다. 1은 상설기관이다. 한국.(제한 외국인처우기본법 8 조 참조). 2. 외국인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2는 부정기의 기관이다. 독일. 3은 없다.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제 67b 지표는 국가 레벨에서의 외국인자문기관의 구성이다. 1은 위원이 외국인주민에 의한 선거이거나 이면단체의 임명이지만 정부개입이 없다. 독일. 2는

위원이 외국인 주민에 의한 선거이거나 이민단체의 임명이지만 정부 개입이 있다. 3 은 국가가 위원을 임명이다. 한국.

(市町村) 등 레벨⁸²에서는 많이 볼수 있다⁸³.

제 67c 지표는 의장이다. 1 은 위원중에서 의장 선출. 2 는 위원과 정부의 공동의장이다. 3 은 정부의 의장이다. 한국, 독일(한국에서는 국무총리가 의장이다).

제 67d 지표는 조직이다. 1 은 독자적의 발의권, 국가기관에 대응한 조언·권고권의 양쪽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한국(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 8 조 2 항 참조). 2 는 한쪽이 법정되어 있다. 3 은 어느 쪽도 없다. 독일.

제 67e 지표는 위원의 선출기준이다. 1 은 양성(兩性)과 모든 국적·민족구성의 양쪽이 법정되어 있다. 2 는 어느쪽인가 한 쪽이 법정되어 있다. 3 은 어느쪽도 법정되어 있지 않다. 한국, 독일.

81. 제 68a 자문은 현(縣) 레벨에서의 외국인자문기관이다. 1 은 상설기관이다. 2 는 부정기기관이다. 한국, 미국, 독일. 3 은 없다.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제 68b 지표는 현(縣)레벨에서의 외국인자문기관의 구성이다. 1 은 위원이 외국인주민에 의한 선거이거나 이민단체의 임명이지만 정부의 개입이 없다. 독일. 2 는 위원이 외국인주민에 의한 선거이거나 이민단체의 임명이지만 정부의 개입이 있다. 3 은 국가가 위원을 임명이다. 한국, 미국.

제 68c 지표는 의장이다. 1 은 조직이다. 1 은 독자의 발의권, 국가기관에 대한 조언·권고권 양쪽이 법정되어 있다. 1 은 위원중에서 의장 선출. 독일. 2 는 위원과 정부의 공동의장이다. 미국. 3 은 정부가 의장이다. 한국.

제 68d 지표는 조직이다. 1 은 독자의 발의권, 국가기관에 대응한 조언·권고권의 양쪽이 법정되어 있다. 한국, 독일. 2 는 한쪽이 법정되어 있음. 미국. 3 은 어느쪽도 법정되어 있지 않음.

제 68e 지표는 위원의 선출기준이다. 1 은 양성과 모든 국적·민족구성의 양쪽이 법정되어 있다. 독일. 2 는 어느쪽인가 한쪽이 법정되어 있음. 3 은 어느쪽도 법정되어 있지 않음. 한국, 미국.

82. 제 69 a 자문은 수도 레벨에서의 외국인자문기관이다. 1 은 상설기관이다. 한국, 프랑스, 독일. 2 는 부정기기관이다. 3 은 없음.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

제 69b 지표는 수도 레벨에서의 외국인자문기관의 구성이다. 1 은 위원이 외국인주민에 의한 선거이거나 이민단체 임명이지만 정부의 개입이 없다. 독일. 2 는 위원이 외국인 주민에 의한 선거이거나 이민단체 임명이지만 정부의 개입이 있다. 프랑스. 3 은 국가가 위원을 임명한다. 한국.

제 69c 지표는 의장이다. 1 은 위원중에서 의장 선출. 독일. 2 는 위원과 정부의 공동의장이다. 3 은 정부의 의장이다. 프랑스.

제 69d 지표는 조직이다. 1 은 독자의 발의권, 국가기관에 대응한 조언·권고권 양쪽이

법정되어 있다. 한국, 독일. 2는 한쪽이 법정되어 있다. 프랑스. 3은 어느쪽도 법정되어 있지 않다.

실시책으로서 국가레벨에서의 적극적인 정보지원정책은 결여되어 있다⁸⁴. 이민조직에의 공적인 조성이 국가⁸⁵, 현(縣)⁸⁶, 시정촌(市町村)^{87 88} 등 어떤

제 69e 지표는 위원의 선출기준이다. 1은 양성과 모든 국적·민족구성의 양쪽이 법정되어 있다. 프랑스. 2는 어느쪽인가 하나가 법정되어 있다. 3. 어느 쪽도 법정되어 있지 않다. 한국, 독일.

83. 제 70 a 지표는 외국인이 집주하는시정촌(市町村) 레벨에서의 외국인 자문기관이다. 1은 상설기관이다. 한국, 독일. 2는 부정기 기관이다. 미국. 프랑스. 3은 없다 일본, 영국, 캐나다, 스웨덴.

제 70b 지표는 외국인이 집주하는시정촌(市町村)레벨에서의 외국인 자문기관의 구성이다. 1은 위원이 외국인 주민에 의한 선거이거나 이민단체의 임명이지만 정부개입이 없다. 독일. 2는 위원이 외국인 주민에 의한 선거이거나 이민단체의 임명이지만 정부개입이 있다. 프랑스. 3은 국가가 위원을 임명한다. 한국, 미국.

제 70c 지표는 의장이다. 1은 위원중에서 의장을 뽑는다. 독일. 2는 위원과 정부의 공동의장이다. 미국. 3은 정부가 의장이다. 한국, 프랑스

제 70d 지표는 조직이다. 1은 독자의 발의권, 국가기관에 대응하는 조언·권고권 양쪽이 법정되어 있다. 한국, 독일. 2는 한 쪽이 법정되어 있다. 미국 프랑스. 3은 어느 쪽도 법정되어 있지 않다.

제 70e 지표는 위원의 선출기준이다. 1은 양성과 모든 국적·민족구성의 양쪽이 법정되어 있다. 2는 어느 쪽인가 한쪽이 법정되어 있다. 프랑스. 3은 어느쪽도 법정되어 있지 않다. 한국, 미국, 독일.

84. 제 71 지표는 국가(연방제에서는 주)레벨의 적극적인 정보활동이다. 1은 국가정책으로서 행한다. 한국, 영국, 스웨덴. 2는 일정한 주등의 개별정책으로서 행한다. 미국, 캐나다, 독일. 3은 적극적인 정보활동은 없다. 일본 프랑스.

85. 제 72 지표는 이민조직에의 국가레벨의 공적조성이다. 1은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행한다. 한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한국에서는 이민조직에의 조성은 국가레벨 자문기관에의 참가와 관계없이 존재한다). 2는 일정한 조건으로 행한다. 영국, 캐나다. 3은 원조하지 않는다. 일본. 미국.

86. 제 73 지표는 현(縣)레벨의 이민조직에의 공적조성이다. 1은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행한다.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한국에서는 이민조직에의 조성은 현(縣)레벨의 자문기관에의 참가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한다). 2는 일정한 조건으로 행한다. 영국, 캐나다, 3은 원조가 없다. 일본.(또한 제 75 지표의 경우과 같이 일본 자치단체에서는 이민조직과 당해년도의 다문화공생사업에의 조성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항상적이지는 않고 민족학교 활동에의 조성은 결여되어 있다).

87. 제 74 지표는 수도 레벨의 이민조직에의 공적조성이다. 1은 국민과 같은 조건.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한국에서는 이민조직에의 조성은 수도 레벨의 레벨에서도 충분하지 않다. 자치단체의 다문화 공생사업에의 조성금을 외국인단체가 채택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인학교에의 재정지원은 결여되어 있다.

5 영주허가	스웨덴	캐나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
5.1 유자격자	75	67	<u>50</u>	<u>0</u>	<u>33</u>	<u>8</u>	42	67
5.2 취득요건	50	<u>35</u>	50	<u>17</u>	<u>8</u>	46	50	38
5.3 자격의 안정	86	50	<u>36</u>	<u>21</u>	71	79	57	43
5.4 자격에 동반되는 권리	100	100	<u>63</u>	88	88	<u>50</u>	100	88

영주허가에 대하여 유자격자 요건은 체재기간⁸⁹이 원칙 10년으로 길고 일정한 단기체재의 재류자격으로는 영주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한편 학생의 거류기간도 고려되어⁹⁰ 영주허가 전에 허용된 재외(在外)기간⁹¹은 3년간 18개월로 길다.

자문기관에의 참가와 관계없이 존재한다). 2는 일정한 조건으로 행함. 영국, 캐나다. 3은 원조가 없다. 일본.

88. 제 75 지표는 외국인이 거주하는 시정촌(市町村)레벨의 이민조직에의 공적조성이다. 1은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행함.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한국에서는 이민조직에의 조성은 시정촌(市町村)레벨의 자문기관에 참가와 관계없이 존재한다). 2는 일정한 조건으로 행함. 영국, 캐나다. 3은 원조가 없다. 일본.

89. 제 76a 지표는 영주허가에 필요한 거주기간의 요건이다. 1은 5년보다 짧다. 미국, 캐나다, 스웨덴. 2는 5년. 한국, 프랑스, 독일. (한국에서는 2년의 결혼이민 이외 원칙 5년). 3은 5년보다 길다. 일본, 영국, (일본에서는 원칙 10년).

제 76b 지표는 영주허가 때 고려하는 문서다. 1은 어떤 법적 자격도 가능하다. 캐나다. 2는 어떤 체재허가도 가능하다. 독일, 스웨덴. 3은 일정한 단기체재를 제외한다. 일본,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90. 제 77 지표는 학생 때의 체재기간이다. 1은 계산된다. 일본, 한국, 캐나다, 스웨덴. 2는 할인되어 계산된다. 3은 계산 안 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91. 제 78 지표는 영주허가 전에 허용된 재외(在外)기간이다. 1은 계속해서 6개월로 합계 10개월보다 길다. 일본, 미국. 2는 계속해서 6개월로 합계 10개월이다. 독일, 스웨덴. 3은 그것보다 짧다. 한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한국은 3개월).

92. 제 79a 지표는 언어요건이다. 1은 필요없거나 임의의 코스이다. 일본, 한국, 미국, 스웨덴. 2는 언어코스의 이수율 요건으로 한다. 영국, 프랑스. 3은 언어시험을 포함한다. 캐나다. 독일.

제 79b 지표는 언어요건 레벨이다. 1은 A1 이하의 레벨이다. 한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2는 A2 레벨이다. 3은 B1 이상의 레벨이다. 독일.

제 79c 지표는 사회·문화적 통합요건이다. 1은 불필요하거나 임의의 코스이다. 캐나다. 2는 통합코스의 이수율 요건으로 한다. 영국, 프랑스. 3은 통합시험을 포함. 독일.

자격취득 요건으로 언어조건은 없다⁹². 하지만 생계요건이 있어⁹³ 심사결과 대기기한이 없고⁹⁴ 신청수수료는 8,000 엔으로 싸다⁹⁵.

자격안정에 대해 영주허가의 유효기한은 없고 외국인등록증(또는 재류카드) 갱신(확인)교부기간을 고려해도 5년 이상이다⁹⁶. 갱신은 자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⁹⁷. 자격취득 후의 재외체재기간⁹⁸은 3년이상 가능하다. 불허가·취소·갱신거부

제 79d 지표는 언어요건·통합요건의 면제다. 1은 교육자격 등의 개인능력의 고려, 장애인 그룹의 면제등 양쪽이 있다. 독일. 2는 어느 쪽인가 한 가지이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 3은 어느 쪽도 없다.

제 79e 지표는 언어요건 판정자이다. 1은 언어교육 전문가이면서 정부에서 독립한 사람이 행한다. 영국, 캐나다, 독일. 2는 언어교육 전문가이지만 정부에서 독립하지 않은 정부언어기관의 직원이 행한다. 프랑스. 3은 언어교육의 전문가도 아니고 정부에서 독립한 사람도 아니고 경찰이나 외국인관청, 컨설턴트가 행한다.

제 79f 지표는 비용이다. 1은 무료 또는 저액. 캐나다, 프랑스, 독일. 2는 통상의 행정수속비용이다. 3은 고액. 영국.

제 79g 지표는 언어요건 지원 비용이다. 1은 무료 또는 저액이다. 캐나다, 프랑스. 2는 통상의 행정수속 비용이다. 독일. 3은 고액이다. 영국.

93. 제 80 지표는 생계요건이다. 1은 없거나 생활보호보다는 낮지만 무수입은 제외된다. 미국. 2는 생활보호보다는 높지만 풀타임 노동이 아니어도 좋다. 한국,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3은 풀타임으로 합법적인 일이 아니면 안된다. 일본, 영국, 독일.

94. 제 81 지표는 심사결과 대기기한이다. 1은 6개월 이하로 법정되어 있다. 2는 6개월보다 길지만 법정되어 있다. 프랑스. 3은 기한의 규정이 없다. 일본,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95. 제 82 지표는 신청·발행 비용이다. 1은 무료이거나 약간의 비용이다. 2는 통상 일반적인 행정수속과 같은 비용이다. 일본, 한국, 스웨덴. 3은 고액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96. 제 83 지표는 영주허가의 유효기간이다. 1은 5년 이상이다. 일본, 한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도 한국도 영주허가에 유효기간은 없다. 일본에서는 외국인등록증 갱신이 5년마다 있었지만 개정입관법에 의해 2012년부터 도입한 새로운 재류카드의 갱신은 7년마다이다). 2는 3년이상 5년 미만이다. 3은 3년 미만이다.

97. 제 84 지표는 갱신이다. 1은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일본, 한국, 독일, 스웨덴. 2는 신청에 의해 갱신된다. 미국, 프랑스. 3은 본래의 조건에 합격했는지를 요건으로 한다. 영국, 캐나다.

98. 제 85 지표는 자격취득 후의 재외체재기간이다. 1은 3년 이상이다. 일본, 프랑스.

(일본에서는 재입국 허가기간이 최장 3 년에서 1 년 연장하여 4 년까지였으나 개정입관법에 의해 2012 년부터는 최장 5 년에서 1 년 연장하여 6 년까지 가능하게

사유는 ⁹⁹ 허위신고·중대범죄·공공질서위반이 있다. 강제로 퇴거시키지 않는 경우의 고려 사유로는 ¹⁰⁰ 「재류특별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본인의 행동, 연령, 체재기간, 가족상황, 국가와의 연결, 출신국과 관계의 희박을 고려하는 취지가 명기되어 있다.

강제퇴거 기피이유로서 ¹⁰¹ 20 년 이상 장기거주자, 미성년자, 국내에서 태어난 거주자 또는 18 세까지 10 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 강제퇴거금지 규정은 입관법에는 없다. 불허가나 취소, 갱신거부의 경우 법적보장은 ¹⁰² 행정수속법 적용도 제외되어 있어 불복신청의 제도가 없는 문제도 있다.

자격에 따르는 권리로서 퇴직후의 거주권은 ¹⁰³ 유지된다. 고용·자영·경제 활동에

되었다. 2 는 1 년보다 길고 3 년보다 짧다. 한국, 캐나다, 프랑스. (한국은 2 년). 3 은 1 년 이하이다. 미국, 영국, 독일.

99. 제 86 지표는 불허가·취소·갱신거부의 사유이다. 1 은 허위의 판명만이거나 공공·국가안전의 위협만이거나 허위의 판명과 공공·국가안전의 위협만이다. 독일. 2 는 중대범죄의 유죄, 또는 본래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실업 등)의 어느 것인가를 포함. 한국, 캐나다, 스웨덴. 3 은 공공·국가안전의 위협, 본래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실업등)을 포함. 일본,미국, 영국, 프랑스.

100. 제 87 지표는 강제로 퇴거시키지 못하는 경우의 고려사유이다. 1 은 본인의 행동, 연령, 체재기간, 가족상황, 거주국과의 연결, 출신국과의 (무)관계, 체재기간의 단축화의 모든것을 고려한다.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2 는 적어도 연령, 체재기간, 가족상황, 거주국과의 연결을 고려한다. 영국, 캐나다. 3 은 상기의 어느 쪽인가를 고려하거나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한국, 미국.

101. 제 88 지표는 강제퇴거기피 이유이다. 1 은 20 년 이상의 장기거주자, 미성년자, 국내에서 태어난 거주자 또는 18 세까지 10 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자 모두에게 강제퇴거하지 않는다. 프랑스, 스웨덴, 2 는 어느쪽이건 1 가지 이상의 경우에 강제퇴거하지 않는다. 3 은 강제퇴거기피 이유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일본,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102. 제 89 지표는 불허가·취소·갱신거부의 경우 법적보장이다. 1 은 이유개시, 이의신청, 독립의 행정기관이나 재판소에의 심사청구나 제소, 모두가 보장되어 있다.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2 는 적어도 이유개시와 이의신청이 보장되어 있다. 3 은 이유개시와 이의신청, 어느 쪽인가 한 가지이거나 어느 쪽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일본.

103. 제 90 지표는 퇴직후의 거주권이다. 1 은 거주권이 유지된다. 일본,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2 는 권리가 축소되어 유지된다. 3 은 유지되지

않는다.

의 액세스와 노동조건은 ¹⁰⁴ 국민과 동등하다. 사회보장·복지·의료·주택에의 액세스 ¹⁰⁵ 는 국민과 같다. 학력과 자격의 승인에 대해서는 ¹⁰⁶ 일정한 자격은 승인되지 않는다.

6 국적취득	스웨덴	캐나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
6.1 유자격자	60	95	80	65	90	75	<u>30</u>	40
6.2 취득요건	71	67	<u>36</u>	<u>30</u>	<u>33</u>	<u>25</u>	<u>38</u>	41
6.3 자격의 안정	86	<u>36</u>	<u>29</u>	<u>43</u>	64	<u>36</u>	<u>36</u>	50
6.4 이중국적	100	100	100	100	50	100	75	0

국적취득의 유자격자에 경우 1 세는 ¹⁰⁷ 원칙 5 년으로 귀화할 수 있다. 국적취득 이전에 허가받은 재외거주 기간은 ¹⁰⁸ 5 년간에 6 개월이다. 국민의 배우자의 경우

104, 제 91 지표는 고용·자영·경제활동에의 액세스와 노동조건이다. 1 은 국민과 동등하다. 일본,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2 는 국민을 우선한다. 3 은 다른 제약조건이 부과된다. 프랑스

105. 제 92 지표는 사회보장·복지·의료·주택에의 액세스이다. 1 은 국민과 같다. 일본, 한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한국의 생활보호는 결혼이민에 한정?). 2 는 국민을 우선. 3 은 다른 제약조건이 부과된다. 미국. (또한 국민연금에 관한 일본의 판례는 국민을 우선하는 것도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1980 년대 법개정 이전의 무연금자 구제가 불충분한 문제로 남아 있다).

106. 제 93 지표는 학력과 자격의 승인이다. 1 은 국민과 같다. 한국, 캐나다, 스웨덴. 2 는 국민과 다른 수속이다. 미국, 영국, 독일. 3 은 승인이 안됨, 일본, 프랑스. (사실은 일본과 한국은 같을지도 모른다. 외국자격을 국내자격과 같이 취급을 하지 않는 않는 것으로 일본에서는 승인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지만 한국에서는 외국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한국인은 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107. 제 94 지표는 1 세의 국적취득이다. 1 은 5 년 이하의 거주이다. 일본, 한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한국에서는 국적법 5 조(일반귀화요건)에 따르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6 조 및 7 조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1. 5 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는 5 년에서 10 년, 영국, 독일. 3은 10 년 이상.

108. 제 95 지표는 국적취득 이전에 허가받은 재외거주 기간이다. 1 은 이하보다 길다. 캐나다, 프랑스, 독일. 2는 계속되지 않게 10 개월 또는 계속해서 6 개월까지이다. 일본, 미국.(또한 일본에서는 공표되어있지는 않지만 과거 5 년간에 6 개월이라는 기준이 있는 것 같다). 3은 그것보다 짧다. 한국, 영국, 스웨덴.

109. 제 96a 지표는 국민의 배우자의 경우이다. 1은 3 년이하 거주 또는 혼인에는 ¹⁰⁹ 3 년 또는 1 년(3 년 이상의 혼인)의 거주로 되지만 내연관계나 동성의 파트너의 경우는 ¹¹⁰ 일반외국인과 같은 거주요건이다. 2세 ¹¹¹나 3세 ¹¹²의 경우에도 귀화가 필요하다.

국적취득 요건으로서 언어요건은 ¹¹³ 간단한 일본어로 초등학교 3 학년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고령자 등에의 언어요건의 면제요건은 법정되어 있지 않다.

요건으로 한다. 일본, 한국, 미국, 독일, 스웨덴. (한국에서는 계속 2 년 이상 거주 또는 3 년 이상의 혼인력이 있는 경우는 계속 1 년 이상 거주). 2는 3 년을 넘어 5 년 이하의 거주 또는 혼인을 요건으로 한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 3은 5 년을 넘는 거주 또는 혼인을 요건으로 한다.

110. 제 96b 지표는 파트너나 내연관계의 거주요건이다. 1은 배우자와 같다. 영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2는 배우자보다 길지만 일본 외국인보다는 짧다. 3은 일반외국인과 같다. 일본, 한국, 미국, 프랑스.

111. 제 97 지표는 2 세의 국적취득이다. 1은 출생에 의해 자동적인 취득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2는 출생후 신고나 선언에 의해 취득한다. 프랑스, 스웨덴. 3은 (간이화되었다고 해도) 귀화수속에 따른다. 일본, 한국.

112. 제 98 지표는 3 세의 국적취득이다. 1은 출생에 의해 자동적으로 취득한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2는 출생후의 신고나 선언에 의해. 스웨덴. 3은(간이화되었다고 해도) 귀화수속에 따른다. 일본, 한국. (한국의 국적법 6 조(간이귀화요건) 참조).

113. 제 99a 지표는 언어요건이다. 1은 없거나 또는 A1 이하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 2는 A2 레벨이다. 일본, 한국. (일본의 초등학교 3,4 학년, 한국의 3,4 학년 레벨은 대략 A2 레벨). 3은 B1 이상 또는 기준이 없는 행정재량에 따름. 프랑스, 독일).

제 99b 지표는 언어요건의 면제규정이다. 1은 교육이나 자격을 고려한 면제, 연령이나 장애등을 고려한 면제의 양쪽이다. 독일, 스웨덴. 2는 그 중 하나가 있음.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한국의 국적법시행령 4 조(귀화적격심사)참조). 3은 어느 쪽도 없다. 일본, 프랑스.

제 99c 지표는 언어요건판정자이다. 1은 언어교육 전문가이면서 정부에서 독립한 자가 행함. 영국, 캐나다, 독일. 2는 언어교육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독립하여

있지 않은 정부언어기관 직원이 행함. 한국. (한국의 필기시험은 서울국립대학 교육학부와 민간조사에 의해 개발되어 법무부 입국관리국의 교육전문가가 담당한다). 3 은 언어교육전문가도 아니고 정부에서 독립한 사람도 아닌 경찰이나 외국인 관청, 컨설턴트가 행함. 일본, 미국.

제 99 d 지표는 비용이다. 1 은 무료이거나 저액이다. 일본,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2 는 통상의 행정수속 비용이다. 한국. 3 은 고액이다, 영국.

제 99e 지표는 언어요건 합적지원이다. 1 은 공표되어 있는 질문항목이나 이전에 일본인종의 생활양식이 문제화 되었었지만 요즘은 언어 이외의 통합요건¹¹⁴ 은 없다. 하지만 생계요건이 있어¹¹⁵ 범죄력¹¹⁶ 그 외의 소행요건¹¹⁷ 이 있다.

학습가이드에 기준을 둔 심사이다. 한국, 미국, 캐나다, 독일. (한국에서는 귀화수속을 촉진하는 무료코스). 2 는 공표되어 있는 코스에 기준을 둔 심사이다. 3 은 공표되어 있지 않은 기준에 의한 심사이다. 영국, 프랑스.

제 99f 지표는 언어요건 지원비용이다. 1 은 무료 또는 저액이다. 한국, 미국, 캐나다.(한국은 무료) . 2 는 통상의 행정수속 비용이다. 독일. 3 은 고액이다. 영국, 프랑스.

114. 제 100a 지표는 통합요건이다. 1 은 없거나 정보의 임의조항이다. 일본, 영국, 스웨덴. 2 는 통합코스의 이수율 요건으로 한다. 3 은 통합시험의 합격을 요건으로 한다. 한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제 100 b 지표는 통합요건의 면제다. 1 은 교육이나 자격을 고려한 면제, 연령이나 장애 등을 고려한 면제의 양쪽이 있다. 독일. 2 는 그 중 어느 것인가 한 가지가 있다.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3 은 어느 것도 없다. 프랑스.

제 100 c 지표는 통합요건의 판정자이다. 1 은 언어교육의 전문가이면서 정부에서 독립한 사람이 행한다. 영국, 캐나다, 독일. 2 는 언어교육의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독립하지 않은 정부언어기관의 직원이 행한다. 한국, 미국. 3 은 언어교육의 전문가도 정부에서 독립한 사람도 아닌 경찰이나 외국인관청, 컨설턴트가 행한다. 프랑스.

제 100 d 지표는 통합요건의 비용이다. 1 은 무료 또는 저액이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2 는 통상 행정수속 비용이다. 한국. 3 은 고액이다. 영국.

제 100e 지표는 통합요건 합격지원이다. 1 은 공표되어 있는 질문항목이나 학습가이드에 의거한 심사다. 한국, 미국, 캐나다, 독일. 2 는 공표되어 있는 코스에 의거한 심사다. 3 은 공표되어 있지 않은 기준에 의한 심사다. 영국, 프랑스.

제 100f 지표는 통합요건 지원비용이다. 1 은 무료 또는 저액이다. 한국, 미국, 캐나다, 독일.(한국은 무료). 2 는 통상 행정수속 비용이다. 3 은 고액이다. 영국, 프랑스.

115. 제 101 지표는 생계요건이다. 1 은 없음. 미국, 캐나다, 스웨덴. 2 는 최저임금 레벨이다. 한국. (한국의 국적법 5 조(일반귀화요건) 참조). 3 은 안정고용 등의 그 외

조건이 필요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116. 제 102 지표는 범죄력이다. 1 은 5 년 이상의 징역·금고 또는 자격인정 집행유예 기간을 고려한다. 스웨덴. 2 는 5 년 미만의 징역·금고를 고려한다. 캐나다. 3 은 경범죄 위반 등 그 외 범죄의 경우도 고려한다. 일본,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117. 제 103 지표는 소행조항이다. 1 은 없다. 캐나다, 독일. 2 는 있지만 시행세칙은 없다. 일본, 한국, 스웨덴. (한국에서는 구직하는 한국인과 같은 조건이다). 3 은 시행세칙이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심사기한의 상한규정은 없지만¹¹⁸ 심사비용은 무료이다¹¹⁹.

자격의 안정에 대해, 그 외의 불허가사유는¹²⁰ 허위의 판명이나 공안요건이다. 재량의 폭이 커서¹²¹ 불허가를 하기 전에 고려하는 요소는¹²² 소행, 연령, 체재기간 등이 국적법에 명시되어 있다. 본인과 가족에의 영향, 국가와의 연결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불허가의 경우¹²³의 이유개시나 불복신청의 제도가 없다. 또한 일본에서는 국적취득¹²⁴의 제도¹²⁵는 없다¹²⁶.

118. 제 104 지표는 심사기간의 상한이다. 1 은 6 개월 이내이다. 영국. 2 는 6 개월을 넘지만 법정되어 있다. 프랑스. 3 은 이런 종류의 규정이 없다. 일본, 한국, 미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119. 제 105 지표는 귀화수속 비용이다. 1 은 무료. 일본, 프랑스. 2 는 통상 행정수속과 동액이다. 한국, 캐나다, 스웨덴. (한국에서는 10 만원). 3 은 고액. 미국, 영국, 독일.

120. 제 106 지표는 불허가의 추가이유이다. 1 은 허위의 판명만이다. 2 는 허위의 판명과 공공·국가안전에의 위협만이다. 한국, 스웨덴. 3 은 그 외의 이유도 있다.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121. 제 107 지표는 불허가에 있어서 재량이다. 1 은 법이 정하는 요건에 합치하면 신청이 허가된다. 독일. 2 는 좁은 폭의 재량이 있다. 한국, 미국, 캐나다, 스웨덴. (한국에서는 면접시에 재량이 작용한다). 3 은 재량수속이다. 일본, 영국, 프랑스.

122. 제 108 지표는 불허가에 있어서 참고사항이다. 1 은 본인의 행동, 연령, 체재기간·국적보유기간, 본인과 가족에의 영향, 국가와의 연결, (거주허가에의 격하)대체 수단 등의 모든 것을 고려한다. 영국, 스웨덴. 2 는 적어도 연령, 체재기간·국적보유기간, 본인과 가족에의 영향, 국가와의 연결을 고려한다. 3 은 연령, 체재기간·국적보유기간, 본인과 가족에의 영향, 국가와의 연결의 어느 것인가를 고려한다. 일본, 한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123. 제 109 지표는 불허가 경우의 법적보장이다. 1 은 이유개시, 이의신청, 독립 행정기관이나 재판소에의 심사청구, 제소의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다.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2 는 적어도 이유개시와 이의신청이 보장되어 있다. 3 은 이유개시와 이의신청의 어느 쪽인가 한 가지, 양쪽 모두 보장되어 있다. 일본.

124. 제 110 지표는 자격취소 이유이다. 1 은 허위의 판명만이다. 일본, 캐나다, 독일,

스웨덴. 2 는 허위 판명과 공공·국가안전의 위협만이다. 한국, 미국. 3 은 그 이외 것도 이유로 한다. 영국, 프랑스.

125. 제 111 의 지표는 취소의 시간적 제한이다. 1 은 5 년 이내이다. 일본, 영국, 독일, 스웨덴. 2 는 5 년을 넘는다. 프랑스. 3 은 시간의 제한이 없다. 한국, 미국, 캐나다.

126. 제 112 지표는 취소에 의한 무국적이다. 1 은 법률에 금지되어 있다. 일본, 프랑스, 스웨덴. 2 는 재량에 따른다. 독일. 3 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복수국적에 대해 1 세의 경우도 ¹²⁷ 2 세나 3 세의 경우에도 ¹²⁸ 귀화할 때는 종래의 국적포기가 필요하다.

7 차별금지	스웨덴	캐나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
7.1 정의와 개념	79	100	100	100	50	86	29	14
7.2 적용범위	100	100	100	100	75	100	100	0
7.3 집행메카니즘	83	63	88	67	50	67	42	29
7.4 평등정책	89	94	67	78	17	56	44	11

127. 제 113 지표는 1 세가 귀화할 때의 종래의 국적포기이다. 1 은 필요 없으며 복수국적을 용인하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2 는 필요하지만 출신국에서 국적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나 불합리한 고액 비용이 필요한 경우 등의 예외도 있다. 한국, 독일. (예외는 한국의 국적법 6 조 2 항에 의하면 「①한국인과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서 2 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이거나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서 1 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 후 3 년 이상 경과한 자」, 동 7 조 1 항에 의하면 「②외국인이 한국에 특별한 공로를 세운자, ③과학, 경제, 문화, 스포츠 등 특별한 분야에서 대단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 한국 국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받은 자」이다. 3 은 필요하다. 일본. (하지만 국적법 5 조 2 항은 「법무대신은 외국인인 그의 의사에 관계없이 출신국적을 상실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일본국민과의 친족관계 또는 경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했을 때는 그 자가 전항 5 호(국적을 가지지 않거나 또는 일본 국적 취득에 따라 출신국 국적을 상실해야만 한다=필자 주)에 내세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을 때도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어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2 가 적당하지만 한국이나 독일보다도 예외가 좁기 때문에 같이 취급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128. 제 114 지표는 2 세나 3 세의 복수국적이다. 1 은 양쪽 다 인정된다.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한국에서는 출생에 의해 복수국적을 얻은 자는 20 세가 되기 전에 1 개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한국에서 외국적을 외국의 국적으로 행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이것에 한하지 않는다. 국적법 10 조 2 항, 12 조 1 항). 2 는 혼인관계나 출생지주의국에서 태어난 것 등을 조건하에 인정하고 있다. 독일. 3 은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 (일본국적법 14 조 1 항에 「외국의 국적을 가진 일본국민은 외국 및 일본의 국적을 갖게 되었을 때가 20 세가 되기 이전이면 20 세가 될 때까지, 그 시기가 20 세 이후인 때는 그 시기부터 2 년 이내에 어느 쪽인가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국적의 선택을 정했으며 동 15 조 1 항에 「법무대신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일본국민에게 전 조 제 1 항에 정해진 기한 내에 일본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자에 대해 서면으로 국적의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을 최고할 수 있다」가 있다 하지만 이 최고의 실례는 없고 다른 국가가 복수국적을 용인하고 있으면 사실상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 않는 점은 ¹²⁹ 대단히 낮게 평가된다 ¹³⁰. 사인간의 차별사례에 대해 ¹³¹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은 볼 수 있지만 행정조직의 근거법령으로서 ¹³² 차별금지법이 요망된다. 장래의 차별금지법의 내용으로는 민족차별 등 외에 국적차별이나 민족적 프로파일링 금지를 포함하든지 ¹³³ 표현의 자유의 제약사유 ¹³⁴, 복합차별에 관한 특별규정 ¹³⁵의 문제를 어떻게 정해야하는지

법률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 정리된다).

129. 제 115 지표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해리스먼트, 차별지시를 포함한 차별의 정의가 기준인 것의 차별이유이다. 1 은 인종과 민족, 종교와 신념, 국적의 3 가지를 포함한다.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법 2 조 4 항 (정의) 참조). 2 는 상기의 2 개를 포함한다. 독일. 3 은 인종과 민족 뿐, 없음, 또는 국제기준이나 헌법상의 법해석에 따른다. 일본.

130. 제 116 지표는 단체에 의한 단정된성질(assumed characteristics)에 기준에 의거한 차별의 정의가 커버하는 차별이유이다. 1 은 인종과 민족, 종교와 신념, 국적의 3 가지를 포함한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2 는 상기의 2 개를 포함한다. 3 은 인종과 민족 뿐, 없음, 또는 국제기준이나 헌법상의 법해석에 따른다. 한국, 독일.

131. 제 117 지표는 자연인과 법인에 대한 차별금지법의 적용이다. 1 은 사적부분에도, 공적활동을 행하는 사적부분에도 적용된다.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법 30 조(위원회의 조사대상)참조)

132. 제 118 지표는 공적부분에의 차별금지법의 적용이다. 1 은 공적기관에도 경찰에도 적용된다. 일본,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에서는 특별한 차별금지법은 없지만 헌법 14 조는 공적기관과 경찰의 인종·신조 등의 차별에도 적용되어, 노동기준법 3 조가 노동조건에 관한 국적·신조차별에도 적용되기에 1 로 변경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법 30 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참조). 2 는 그 중 어느

것인가가 가능하다. 스웨덴. 3 은 어느 것도 적용되지 않는다.

133. 제 119 지표는 법이 금지하는 내용이다. 1 은 인권·민족이나 종교·신념이나 국적에 의거한 ①폭력교사나 증오, 차별, ②인종이나 종교에 동기를 둔 공공장소에서의 모욕이나, 협박, 중상, ③그 원인의 공격개시나 조언, 선동이나 사주, ④인종적 프로파일링의 4 개를 모두 포함한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2 는 인종적 프로파일링 이외의 3 개를 포함한다. 독일. 3 은 상기의 2 개 이내를 포함할 뿐이다. 한국.

134. 제 120 지표는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의 제약이 허가되기 위한 평등취급의 저해사유다. 1 은 인종과 민족, 종교와 신념, 국적의 3 가지를 포함,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2 는 상기의 2 가지를 포함. 3 은 인종과 민족 뿐, 없음, 또는 재판소의 해석에 따름. 한국, 독일.

135. 제 121 지표는 복합차별금지의 특별규정이다. 1 은 있다. 피해자의 선택에 의해의 과제가 있다. 또 적용사례로서 고용이나 직업훈련¹³⁶, 교육¹³⁷, 사회보장¹³⁸, 사회적 혜택¹³⁹, 주택¹⁴⁰, 의료¹⁴¹, 등의 공적서비스 분야마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2 는 있지만 피해자는 선택할 수 없다. 독일. 3 은 없다. 한국, 프랑스, 스웨덴.

136. 제 122 지표는 고용이나 직업훈련에의 차별금지법의 적용이다. 1 은 인종과 민족, 종교와 신념, 국적의 3 가지를 포함.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법 2 조). 2 는 상기의 2 가지. 일본, 독일. (일본에서는 특별히 차별금지법은 없지만 노동기준법 3 조는 고용에 있어서 국적·신조차별을 금지하고 고용안정법 3 조는 직업훈련에 있어서 국적·신조·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서 2 로 변경했다). 2 는 인종과 민족 뿐, 없음, 또는 국제기준이나 헌법에 의거한 재판소의 해석에 따름.

137. 제 123 지표는 교육에의 차별금지법의 적용이다. 1 은 인종과 민족, 종교와 신념, 국적의 3 가지를 포함.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법 2 조참조). 2 는 상기의 2 가지. 일본. (일본에서는 특별히 차별금지법은 없지만 교육기본법 4 조는 교육에 있어서 인종·신조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서 2 로 변경했다). 3 은 인종과 민족 뿐, 없음, 또는 국제기준이나 헌법에 의거한 재판소의 해석에 따름.

138. 제 124 지표는 사회보장에의 차별금지법의 적용이다. 1 은 인종과 민족, 종교와 신념, 국적의 3 가지를 포함.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법 2 조). 2 는 상기의 2 가지. 3 은 인종과 민족 뿐, 없음, 또는 국제기준이나 헌법에 의거한 재판소의 해석에 따름.

139. 제 125 지표는 사회적혜택(social advantages)에의 차별금지법 적용이다. 1 은 인종과 민족, 종교와 신념, 국적의 3 가지를 포함.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법 2 조). 2 는 상기의 2 가지를 포함. 3 은 인종과 민족 뿐, 없음, 또는 국제기준이나 헌법에 의한 재판소의 해석에 따름.

140. 제 126 지표는 주택을 포함한 공공의 물건이나 서비스의 이용에의 차별금지법 적용이다. 1 은 인종과 민족, 종교와 신념, 국적의 3 가지를 포함.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법 2 조). 2 는 상기의 2 개를 포함. 독일. 3 은 인종과 민족 뿐, 없음, 또는 국제기준이나 헌법에 의거한 재판소의 해석에 따름.

141. 제 127 지표는 의료를 포함한 공공의 용도로 제공되는 물건이나 서비스 이용에의 차별금지법의 적용이다. 1 은 인종과 민족, 종교와 신념, 국적의 3 가지를 포함.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법 2 조). 2 는 상기의 2 가지를 포함. 독일, 3 은 인종과 민족 뿐, 없음, 또는 국제기준이나 헌법에 의거한 재판소의 해석에 따름.

실시 메카니즘으로서 민사·형사·행정수속에 의한 구제¹⁴² 대체적인 분쟁해결 수속¹⁴³, 제소이유¹⁴⁴, 민사재판과 행정수속에 필요한 기간¹⁴⁵, 거증책임의 전환¹⁴⁶, 증거¹⁴⁷, 부당피해방지¹⁴⁸, 국가의 재정지원¹⁴⁹, 평등보호기관¹⁵⁰, 소송형식¹⁵¹,

142. 제 128 지표는 피해자가 호소할 수 있는 대상이다. 1 은 민사수속, 형사수속, 행정수속의 모든것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2 는 상기의 2 가지를 대상으로 한다. 캐나다, 스웨덴. 3 은 상기의 1 가지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법 45 조(고발 및 징계권고)참조).

143. 제 129 지표는 대체적인 분쟁해결수속이다. 1 은 구속력이 있는 결정, 상소의 양쪽이 있다. 한국, 미국, 스웨덴.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법 40 조(합의의 권고)참조). 2 는 어느 쪽인가 1 가지가 있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3 은 어느 것도 없다.

144. 제 130 지표는 피해자가 호소할 수 있는 이유이다. 1 은 인종과 민족, 종교와 신념, 국적의 3 가지를 포함.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법 2 조). 2 는 상기의 2 가지를 포함. 3 은 인종과 민족 뿐이다.

145. 제 131 지표는 민사재판과 행정수속 양쪽의 평균기간이다. 1 은 6 개월 이내이다. 2 는 1년 이내이다. 한국, 독일, 스웨덴. (한국은 약 8 개월에서 10 개월이다). 3 은 1년을 넘는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146. 제 132 지표는 거증책임의 전환이다. 1 은 민사재판에서도 행정수속에서도 볼 수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2 는 민사재판에서만 볼 수 있다. 독일. 3 은 없다. 한국, 캐나다.

147. 제 133 지표는 재판소에서 인정하는 증거이다. 1 은 상황심사, 통계데이터의 양쪽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2 는 어느 쪽인가 한 쪽이다. 캐나다, 독일. 3 은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

148. 제 134 지표는 부당피해방지(protection against victimization)이다. 1 은 고용, 직업훈련, 교육, 서비스, 상품의 모든 것에서 볼 수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2 는 고용과 직업훈련에서 볼 수 있다. 프랑스. 3 은 없거나 고용에서만 볼 수 있다. 한국.

149. 제 135 지표는 국가의 재정지원이다. 1 은 변호사 비용 등의 국가의 재정지원이 무료, 무료의 통역 양쪽이 있다.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한국의 국가인권법 47 조(피해자를 위한 법률 구조요청)참조). 2 는 어느 쪽인가 한 가지가 있다. 캐나다. 3 은 어느 것도 없다.

150. 제 136 지표는 평등원리의 보호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법기관이다. 1 은 피해자의 대리, 피해자의 지원, 특별한 피해자가 없는 경우의 소송도 할 수 있다. 프랑스. 2 는 피해자의 대리이거나 피해자를 대신해 제소할 수 있다. 한국, 미국, 캐나다, 스웨덴. (한국의 국가인권법 45·47 조). 3 은 피해자의 지원만이다. 영국, 독일.

151. 제 137 지표는 소송방식이다. 1 은 개인소송, 단체소송, 민중소송의 어느 것도 제재의 태양(態樣)¹⁵² 및 증가산 벌의 이유¹⁵³ 등에 응한 고찰이 요망된다.

평등정책에 대해 특별한 정부기관의 창설¹⁵⁴, 그 피해자 지원¹⁵⁵, 재판소에 준한 활동¹⁵⁶, 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 당사자 적격¹⁵⁷, 독자의 수속개시·조사·증거보장 권한¹⁵⁸, 법이 국가에 명령하는 내용¹⁵⁹, 국가레벨에서의 차별금지의 법령준수

가능하다. 미국, 캐나다. 2 는 어느 쪽인가 2 개만 가능하다. 스웨덴. 3 은 없거나 또는 어느 것인가 1 가지만이다.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152. 제 138 지표는 제재이다. 1 은 물적손해배상, 정신적손해배상, 차별로 상실된 권리회복,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방해배제의 소극적 조치, 반복적 방해를 방지하는 소극적 조치, 위반자의 공표, 법인에의 특별한 제재 중 5 개 이상이 있다. 한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한국에서는 물적손해배상, 정신적손해배상, 차별로 상실한 권리회복, 방해배제의 소극적죄, 반복적 방해를 방지하는 소극적조치). 2 는 적어도 차별로 상실한 권리회복, 방해배제의 소극적조치, 법인에의 특별한 제재가 있다. 영국, 3 은 적도도 상기의 2 개가 있다. 독일.

153. 제 139 지표는 인종·종교·국적에 의거한 차별적인 동기가 증가산 벌의 이유로 취급되는 것이다. 1 은 인종·민족, 종교·신념, 국적의 3 가지 모두의 이유가 고려된다. 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 2 는 인종 또는 종교가 고려된다. 3 은 인종이 규정상 고려되고 있거나 재판소의 해석만에 의해 고려된다. 한국, 프랑스, 독일.

154. 제 140 지표는 평등정책을 위한 특별한 정부기관의 창설이다. 1 은 인종·민족, 종교·신념, 국적의 3 가지 모두가 이유이다.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2 는 2 종류의 이유이다. 독일. 3 은 인종만이다.

155. 제 141 지표는 특별한 기관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권한이다. 1 은 피해자에의 독자의 법적조언, 독자의 사실조사 양쪽이다. 한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2 는 어느

쪽인가 1 가지이다. 미국, 독일. 3 은 어느 것도 없다.

156. 제 142 지표는 재판소에 준한 특별한 기관으로서 활동이다. 1 은 결정에 구속력이 있어 제소할 수 있다. 2 는 어느 쪽인가 1 가지이다. 한국, 캐나다. 3 은 어느 쪽도 없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157. 제 143 지표는 특별한 기관에 신청인을 대신하여 수속을 행하는 당사자 자격이다. 1 은 재판대리, 행정수속대리의 양쪽에 있다. 캐나다, 스웨덴. 2 는 재판대리만이다. 미국. 3 은 없거나 행정수속대리만이다.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158. 제 144 지표는 특별한 기관에 스스로 수속을 개시하고 조사하여 증거를 보강하는 권리이다. 1 은 스스로 수속을 개시하고 조사해 증거를 보강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2 는 스스로 조사하여 증거를 보강할 수 있다. 3 은 이것의 권한이 없다. 한국, 독일.

159. 제 145 지표는 법이 국가자체에 명령하는 내용이다. 1 은 정보선전, 차별문제의 사회적 대화 확보, 시민사회와 조직적인 대화의 3 가지가 있다. 한국, 영국, 캐나다, 의 메카니즘과 정부기관¹⁶⁰, 공적기관에의 평등촉진의무 부여¹⁶¹, 적극적 차별시정조치¹⁶²의 도입 등도 앞으로 검토과제이다.

끝으로

외국인의 권리보장을 수량화하는 선행연구로서 오스트리아의 바우백 등의 연구가 있다¹⁶³. 이전에 그들의 평가항목에 맞추어 일본을 수량화해 보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다. 하지만 평가항목에 점수를 매기는 것이 자의적인 생각이 들어 도중에 단념했다. MIPEX 는 각국의 연구자의 의론을 거쳐 이런 점이 개선되었다고 생각되지만 역시 제 1 의 문제는 평가항목과 점수 설정이 어려운 점이다.

제 2 로 평가의 자의성이 극복되지 않은 중에 각국의 횡축의 비교에 의한 서열화는 편견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 오히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국의 제도가 외국인의 권리보장을 진행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후퇴시키고 있는지의 종축의 평가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3 으로 같은 정책지표의 질문 항목이라도 대답하는 사람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한 평가기준의 설정에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프랑스. 2 는 적어도 1 가지가 있다. 3 은 어느 것도 없다. 미국, 독일.

160. 제 146 지표는 국가레벨에서의 차별금지의 법령순수 메카니즘과 정부기관의 존재다. 1 은 차별금지의 법령순수 메카니즘, 차별금지의 정부기관 양쪽이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2 는 어느 쪽인가 1 가지가 있다. 한국.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의 정부기관이다. 참조, 국가인권위원회법 19·20·21 조). 3 은 어느 것도 없다. 독일.

161. 제 147 지표는 차별금지법이 공적기관에 명령하는 내용이다. 1 은 공적기관에 평등촉진을 의무로 부여해 무차별계약 등의 확보를 의무화 한다. 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 2 는 어느 쪽인가 한 쪽이다. 3 은 어느 것도 의무로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한국, 프랑스, 독일.

162. 제 148 지표는 적극적 차별시정조치이다. 1 은 적극적 차별조치를 규정해 이런 조치의 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 2 는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만이 있다. 독일. 3 은 어느것도 규정이 없다. 한국, 프랑스.

163. Harald Waldrauch and Christoph Hofinger, An index to measure the legal obstacles to the integration of migrants. *New Community*. 23:2, 1997, p. 278; Dilek Çinar et al., *Integrationsindex: Zur rechtlichen Integration von AusländerInnen in ausgewählten europäischen Ländern*. (Vienna: Institut für Höhere Studien, 1995), Anhang 2.

일단 보고자 외에 평가자를 두고 이런 문제를 체크하는 태세는 되어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일본계 외국인 및 그 집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책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일정한 대처를 하고 있지만 일본계 외국인의 외국인등록 인구가 차지하는 인구비율 (아마도 15%)에서 이런 정책을 가점에 평가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MIPEX 의 책임자로 부터 소극적인 의견이 있어 가점을 보류한 경우도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결혼이민과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일반적인 외국인시책이 아닌 것이 많게 느껴진다). 실제로 일본계 외국인도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일본계 정주외국인 시책이라는 틀에서는 질문항목에 따라 가점되기 힘든 경우도 있다. 또 현에 외국인의 자문기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는 현이 늘고 있어서 YES 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그 숫자가 과반수에 달하지 않기 때문에 NO 라고도 대답할 수 있다. 결과는 많은 것을 예시하는 코멘트를 붙이는 것으로 YES 라고 평가하고 있다.

제 4 로 EU 가맹국들을 중심으로한 평가기준이라서 판단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귀화의 언어요건 레벨이다. 일본의 국적법에는 언어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무상 초등학교 3 학년 정도의 일본어능력을 시험한다고도 한다. 아마도 초등학교 3 학년까지 배운 한자를 사용한 문장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가 기준일 것이다. 일본의 평가기준이 특수한 상황인 점은 처음부터 문제라고 생각되었지만 이것이 유럽의 공통언어 참조 틀의 A2 레벨의 「극히 간단한 텍스트라면 이해할 수 있다」레벨에 대응하는지는 판단이 어려웠는데 어쨌건 대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제 5 로 형식적인 법적인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의 평가와 실질적인 권리 보장의 평가는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스웨덴이 항상 제일 높은 통합평가를 받고 있다.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만점이다. 하지만 표 3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¹⁶⁴

국내출생자에 대한 국외출생 이민의 실업률이 높는데 영어권에서는 그 차이가 적다. 한편 유럽 대륙에서는 2 배 가깝고 그중에서도 북구의 스웨덴에서는 2 배를 훨씬 넘는 상황이다. 노동시장에 실질적인 참가가 되어있지 않은 하나의 증거이다. 소위 고급인력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영어권에서 크고 난민이나 그의 인도(人道)이민 비율이 북구에서 높은 것이 이런 상황이 배경에 있다고 생각되지만 법제도의 형식적인 심사기준 외에 실질적인 심사기준에 따른 다른 비교연구와 관련짓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164,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SOPEMI 2012* (Paris: OECD, 2012), p. 93;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SOPEMI 2011* (Paris: OECD, 2011), p. 90.

표 3 국내출생자의 외국출생자의 실업률 (2011 년)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국내출생자	9.9	7.2	8.0	5.4	8.5	6.0
국외출생자	9.8	8.9	9.4	9.5	15.1	16.0

미국에 대한 것은, 2010 년 데이터

